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경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61 발의연월일: 2020. 6. 26.

발 의 자 : 김경협ㆍ이용호ㆍ오영환

전용기 · 이동주 · 유동수

황운하 · 고영인 · 김정호

정성호 · 용혜인 · 이워택

이용빈 · 이해식 · 양정숙

이학영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그동안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책 수행과 계약과정에서 노동권 보호 등 공공의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이 초보적 수준에머물러 있다고 평가됨.

반면 2020년 3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수 있도록 했음.

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맞추어 지

방자치단체도 사회공공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 보 호와 함께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복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규정을 마 련하려는 것임(안 제6조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3(근로관계법령의 준수)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(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수급사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다)의 근로조건이 「근로기준법」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.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6조의3(근로관계법령의 준수)
	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
	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
	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
	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(「하
	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
	률」에 따른 수급사업자가 고
	용한 근로자를 포함한다)의 근
	로조건이 「근로기준법」 등
	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
	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
	<u>킬 수 있다.</u>